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44
----------	------

제출연월일 : 2024. 5. 27.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참여협력담당관)

1. 제안이유

- 가.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에 따라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구축되어 25개의 센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2024. 12. 31. 위탁 계약 기간 종료)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교육복지 지원체제 변화에 따라 지역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및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계속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추진필요성
 - (국가적) 교육취약학생 성장을 돕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실현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 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지역적) 학교-교육청-지역기관-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
맞춤통합지원 실현

- (전문적)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복지 체계적 지원 강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25개 센터)

- 교육복지 일반학교 대상 학생별 위기 상황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관으로서의 연계·협력

- 교육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자원 조사 및 자원 발굴을 통한 풍부한 지역자원 확보

-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라.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모 및 재계약

- (공모) 공개모집 공고 후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재계약) 계약갱신신청서 접수 후 교육지원청별 교육복지협력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바. 예산 규모 : 금21,507,194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센터합계
4인 센터(7개)	1,742,808	1,772,100	1,802,015	5,316,923
5인 센터(15개)	4,364,030	4,440,780	4,519,269	13,324,079
6인 센터(3개)	1,003,839	1,020,680	1,037,730	3,062,249
소계	7,110,677	7,233,560	7,359,014	21,703,251
센터합계(25개)	7,056,349	7,168,334	7,282,511	21,507,194

※ 예산은 민간위탁기간(3년) 동안의 추계액이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총액제+신청제),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

※ 산출근거 :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체제별 예정원가조사보고서

3. 참고사항

가.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성과보고서 : 별첨

나. 관계 법령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